



 연세대학교 성폭력상담실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 02-2123-2118
e-mail : helper@yonsei.ac.kr
homepage : www.yonsei.ac.kr/~helper



성희롱·성폭력 없는 캠퍼스



 연세대학교 성폭력상담실

성희롱·성폭력 없는 캠퍼스



CONTENTS

성희롱·성폭력 없는 캠퍼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 6 성희롱·성폭력이란?
- 8 성희롱·성폭력, 일상 문화의 문제입니다.
- 10 성희롱·성폭력의 판단기준 : 내가 겪은 일은 성폭력일까요?
- 12 바로잡기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대학 내 유형별 성희롱·성폭력

- 16 동료학생들 간 성폭력
- 18 학생/교수 간 성폭력
- 20 데이트 성폭력
- 22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 24 바로잡기 :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버려야 할 생각들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

- 28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평상시 자세
- 30 성희롱·성폭력 대처 방법
- 30 피해를 입었을 때
- 34 가해를 했을 때
- 35 주변 동료·사건 지원자일 때
- 36 성폭력생존자 권리한장

성폭력상담실 안내

- 40 주요 업무
- 42 이용 방법 및 사건 지원 절차
- 43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 : 우리가 함께 변화하기

부록1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부록2 관련 기관 정보

성평등한 캠퍼스 문화 정착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성폭력상담실은 2001년 문을 열어 지금까지 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건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뿐 아니라 예방교육에 힘써 상호존중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구성원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없는 캠퍼스>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희롱·성폭력의 기본 개념, 대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의 구체적 사례와 대처법, 사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담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 책자가 연세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생부터 대학원생, 교수, 직원 등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상호존중의 문화 속에서 성평등한 캠퍼스를 만들어 가는 데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성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폭력은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사회의 산물입니다.”

- 6 • 성희롱·성폭력이란?
- 8 • 성희롱·성폭력, 일상 문화의 문제입니다.
- 10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기준 :
내가 겪은 일은 성폭력 일까요?
- 12 • 바로잡기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폭력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합니다. 즉, 물리적 폭력에서부터 불쾌한 성적 농담과 같은 언어적 유형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폭력인가 아닌가의 1차적인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감정 상태, 증언, 동의 여부 등에 있습니다.

흔히 성폭력이라고 했을 때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교수의 성적 농담, 선배나 동기의 언어적 폭력,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겪게 되는 불쾌감 등 대수롭지 않게 인식되어온 언행들 역시 같은 맥락에 있으며, 피해자의 경험에 따라 전혀 경미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험을 배제한 채 가해자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잘못된 통념을 성찰하고 이를 우리 일상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흔히 성폭력은 강간, 강제 추행 등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희롱은 그보다 가벼운 정도의 성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행위의 강도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며, '성폭력보다 약한 것이 성희롱'은 아닙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을 구분하여 사용할 때, 성희롱(Sexual/Gender harassment)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노동권이나 교육권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여성 혹은 남성의 노동권, 학습권 등 권리 보호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말에서부터 포옹이나 신체적 접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성희롱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성적 폭력과 성차별을 드러내고 여성의 노동권과 학습권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⑥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성폭력을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하여 성희롱을 성폭력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참고 :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성폭력 이야기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성희롱 개념과 확장된 성폭력 개념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장승화, 미간행)]



성희롱·성폭력, 일상 문화의 문제입니다.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특정한 상황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성(性)이라는 이유로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입히는 것입니다.

-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성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성폭력은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사회의 산물입니다.

선배와 후배, 교수와 학생, 상사와 부하 직원 등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하는 대학 사회 내에서도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폭력이 발생하게 된 맥락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학의 '고유한 문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성찰해야 하는 문제이며,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있는 문제입니다.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여 특정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것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단편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교차되는 관계들에 대하여 신중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사회 내의 구성원들의 위치는 매우 다양하고,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맥락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선배배간의 관계나 교수-학생간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나이가 더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선배나 교수일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배나 교수가 여성이고 후배나 학생이 남성일 때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을 대학의 고유한 문화라고 옹호하는 것은 그 심각성을 은폐하고 성폭력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속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거나 성차별적 문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 표현하는 교수, 교수의 성폭력적인 발언을 듣고 문제제기하는 학생들에게 '그럴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고 탓하는 주위 사람들,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성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는 성차별적인 언행, 동아리나 과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외설적인 게시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술 자리에서 특정 성별의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은근히 오가는 몸담패설... 이러한 언행들이 대학에서 '자연스러운 문화'란 이름으로 공유되어 왔음을 인식하고, 스스로와 주변인 모두에게 진지한 성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공동체의 문화를 보다 평등하게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희롱·성폭력의 판단기준: 내가 겪은 일은 성폭력일까요?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심각한 범죄 또는 '평생의 상처'가 되는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 잘 와 닿지 않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성폭력을 경험하고 그에 대해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그 경험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겪은 일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했을 때 주변에서 보일 반응과 스스로를 '성폭력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불쾌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모호한 상황, 자신이 겪은 일이 성폭력 지침서의 사례와는 다르게 '사소한 일' 같다는 느낌이 뒤섞여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경험은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성폭력인 일이 나에게서는 아닐 수도 있고, 예전의 경험이 시간이 지난 후에 성폭력으로 다시 생각되기도 하며, 같은 말도 나와 상대의 관계나 당시 정황에 따라 성폭력이 될 수도/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이 성(姓)에 관한 폭력이라 하더라도 나라는 인격 속에 '성'이라는 부분만 따로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성폭력은 나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상호적이고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 폭력적인 관계에서만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혼란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따라서 자기 경험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묻는 과정은 사람들이 흔히 성폭력이라고 인정하는 일과 나의 경험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맞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나의 느낌,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권력구조, 당시 정황과 맥락을 세세하게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경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할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보다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에 대한 혼란스러움은 들어주는 사람 없이 말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경험을 의미화하는 과정을 의심 없이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삶 전체에서 치명적인 큰 일이라고 여기지 않으면서도 사소한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성폭력에 대해서 직면하여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잡기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통념1. 성폭력은 젊은 여성들에게만 일어난다?

영아부터 노인까지, 여성과 남성 모두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특정한 연령대/성별에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통념2. 대부분의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된 범죄가 많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친족에 의한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교사·동료 등에 의한 성폭력이 그 예입니다.

통념3.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에 의해 일어난다?

성욕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욕구를 느꼈다고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편견이 성폭력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통념4.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고정관념이 오히려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통념5. 아예 보이는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성폭력은 특정한 차림을 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보이는 옷을

입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성적 대상화 되거나 성폭력을 당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성폭력을 당할 이유를 제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념6.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

성폭력은 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조심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평등한 성교육이 실시되고, 성폭력을 부추기는 성문화가 변화되며,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통념7. 연애하는 사이에 성폭력이라 있을 수 없다?

연애를 하는 중에 성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적 행동은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통념8. 성폭력이 행해지는 동안 불평 또는 고통을 드러내지 않거나 침묵하는 것은 동의이다?

침묵이 동의인지 거부인지 헷갈릴 때는 마음대로 넘겨지지 말고 일단 거부라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성폭력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위험을 느껴 침묵만으로 저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념9.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은 인간관계의 활력소가 되거나 분위기를 띄우기 때문에 괜찮다?

원치 않는 성적 농담은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대상이 된 사람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에게 '친밀감 표현'이라는 것은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참고 : 부산 성폭력 상담소(wopower.or.kr),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womenlink.or.kr), 연세대 <성폭력 없는 캠퍼스>중 발행 편집]

대학 내 유형별 성희롱·성폭력

- 16 • 동료학생들 간 성폭력
- 18 • 학생/교수 간 성폭력
- 20 • 데이트 성폭력
- 22 •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 24 • 바로잡기 :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버려야 할 생각들





동료학생들 간 성폭력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에 내재한 불평등한 성별관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동료관계에서 언제든지 언어적, 환경적, 신체적 성희롱 및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내 안의 가부장성에 대한 성찰은 성폭력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카메라로 촬영하여 불쾌감을 주는 등의 행위

이러한 환경적 성폭력은 사건 당사자가 해당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권과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해당 공간 출입 금지 및 공개 사과 등을 통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는 등의 언행

특정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대상화하는 것은 상대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성적대상화하거나 회화화하여 소외시키는 것을 '재미있는 농담'으로 여기는 문화가 은연 중에 당연시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과 모임이나 오프 자리에서 성추행이나 성적 농담, 성을 회화화하는 등의 행위

오프나 개강파티 등에서 술에 취해 성적 농담을 하거나 신체적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술에 취해서 그렇다"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좋은 대처가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용인하는 분위기가 결국 놀이 문화와 성폭력을 구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평소 성차별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배제되지 않는 과반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갑시다.





학생/교수 간 성폭력

학생과 교수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은 수직적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사건의 피해자가 해당 교수에게 논문을 지도 받는 대학원생, 조교,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라는 점은 교수 성폭력 사건이 교수사회의 권력관계나 권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관계의 특성상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피해사실을 공개하거나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에 대한 우려로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은데 올바른 사건 해결과 교육의 장인 대학에서 구성원들의 인격과 학습권을 존중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지도 교수가 술자리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등의 행위

① 수업을 듣거나 논문을 지도받는 학생이 교수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신고하여 대처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료인 경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이며 그에 대해 가해자가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도구를 잘 다루지 못하는 여학생에게 성적인 비유를 하며 비난하는 등의 행위

② 여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과대에서 아예 실험실에 남성만 있다고 전제하고

농담을 하거나 도구 사용이나 실험 과정을 성적인 비유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업을 받는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분명한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몇년 전 A대학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격권 침해 및 성희롱(성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함께, 인권위 주최의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 교수가 징계를 받은 후 피해자가 논문지도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등의 행위

③ 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이 공론화된 후 교수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위축감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하며, 피해자 뿐 아니라 주변 학생,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생활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처와 주변 동료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은 연애 관계 혹은 데이트 중에 일어나는, 상대가 원치 않는 모든 성적 언행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서로 호감을 가진 관계에서 일방적인 '친밀감의 표현'이 상대방에게는 성폭력이 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둘 사이의 관계가 바뀌면서 이전의 경험이 성폭력으로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데이트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연애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규정짓고 연애 관계에서도 여성과 남성에게 각자 다른 역할을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다움'은 데이트 비용의 지불을 할까 말까의 긴장감에서부터 스킨십에서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거나 욕망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때로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에 '동의'하게 만드는 압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남성다움'은 남자가 집에 데려다주어야 한다거나 가방을 들어주는 등 고정된 성역할에 따른 '연애의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애정의 표현은 이렇게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정해진 '사랑의 각본'이나 '스킨십을 단계별로 하는 법'은 없습니다. 키스하는 손을 잡는 것 보다 더 진전된 애정의 표현이고 성관계는 그보다 더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일까요? 연애에 동의했다고 성관계에도 동의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만들어 준 연애각본에 충실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연애 문화와 데이트 성폭력의 밀접한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번 연애 만의 문제'이거나 내가 '이상한 상대'를 만나서 생긴 '우연한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없다면 그 각본 안에서 언제든지 성폭력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귀는 상대방이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하는 등의 언행

◆ 데이트 성폭력은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상대를 의심하고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동 등 상대방에게 정신적 폭력을 될 수 있는 모든 언행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주 연락하고 상대의 모든 것을 알고자하는 마음은 사랑의 감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거나 생활전반을 통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정을 가진 상대에 대한 관심과 '폭력', '구속'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호감을 가진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메일이나 전화, 문자로)연락을 취하여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는 등의 언행

◆ 스토킹에 해당하는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감정과 의사에 관계없이 '밀어부치기'식의 애정표현이 낭만적 사랑의 각본으로 오해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의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의 생활공간으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만큼 당사자의 분명한 의사 표현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2차 가해란 성폭력 사건을 은폐 또는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가해자에게 동조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주변인에게 또 다른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주변 동료나 가족들의 반응은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피해를 극복하고 이후의 건강한 삶을 계획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때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성폭력 사건을 정당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제공자'나 '민감한 사람'으로 치부되어 버린다면, 피해자는 점점 더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워지고 성폭력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주변 동료들로서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피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 ◇ 성폭력 사건이 문제제기 되었을 때 "별 일 아니다", "잘게잘게 해결하자"라거나 "네가 민감해서 그런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자를 돕

겠다는 호의나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언행들이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상담을 청해왔을 때 당사자의 경험을 자의적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 신고를 한 후 학과, 동아리 등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당사자를 비난하거나 적대시하는 등의 언행

- ◇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동아리나 모임 소속일 때 가해자와의 평소 친분이나 선후배 관계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생활공간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올바른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고 반성할 때만이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의 신변을 노출하거나 외부에 발설하는 등의 언행

- ◇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사건 자체나 당사자들의 신변을 외부에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비난하는 주변시선과 수근거림, 자책감("내가 왜 거기에 갔을까" 등) 등의 자기 검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이 유모될 경우 피해자는 원치 않게 성폭력 사건을 계속 떠올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도움을 주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사건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의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본 장에서는 대학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들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대학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유형화했지만, 제시된 예들이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제시된 사례들이 성폭력 사건으로 구성되는 맥락을 이해하고 일상적인 관계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에 참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잡기: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버려야 할 생각들

편협은 남자란, 여성을 보호하고 챙겨주는 남자라고 생각한다.

❖ 여성과 남성은 모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격체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하고 여성은 보호받을 존재라고 규정하는 성 고정관념이 오히려 우리의 생활을 자유롭지 않게 만듭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자는 성관계에 대해서도 개방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즐거 하는 옷차림과 성관계에 대한 태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들의 옷차림을 보고 여성들의 성적 성향을 바로 떠올리는 것은 여성들을 성적인 여성과 아닌 여성으로만 나누는 성차별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닐까요.

성관계는 남자가 리드해야 한다.

❖ 성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자 대화입니다. 누군가의 리드보다는 서로의 기분을 맞추고 느낌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키스나 성적인 접촉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동의를 직접 물어보는 것은 창피하고, 무드를 깨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동의를 묻지 않다가 성폭력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드를 깨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중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어느 누구도 성폭력 피해를 당할만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를 책임질 사람은 가해자이며, 피해자는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밤에 여관이나 집에 따라 왔다는 것은 사실 섹스를 하려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 여관이나 집에 가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는 즉시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당연한 예의겠죠.

섹스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여성은, 솔직히 성관계 경험이 많은 여자라고 생각한다.

❖ 성별이나 성관계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성적인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주고받는 것은 서로의 만족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경험은 무관하며, 여성의 성경험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여성이 성적 주체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차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자들은 은근히 터프하고 거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 실제로 거칠게 행동하는 남자들을 여자들은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싫어하거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자신에게 거칠게 대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는 없지요. 그런 태도는 도리어 편안한 상호교류에 방해가 됩니다.

사귀고 싶은 사람이 싫다고 말한다 해도, 꾸준히 나의 애정을 전달함으로써 사랑을 얻어내는 것도 낭만이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 상대방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애정을 전달하는 것은 일방적인 괴롭힘이 될 수 있으며,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로 위협하는 것은 신체적 폭력보다 약하다.

❖ 언어 역시 강력한 폭력이 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성희롱 · 성폭력 예방과 대처

“피해자는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모든 정보와 지지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28 • 성희롱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평상시 자세
- 30 • 성희롱 · 성폭력 대처 방법
 - 30 피해를 입었을 때
 - 34 가해를 행했을 때
 - 35 주변 동료 · 사건 지원자일 때
- 38 • 성폭력생존자 권리한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평상시 자세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일방적으로 할 때 발생합니다. 그런 종류의 언행을 폭력이 아닌 '익숙한 문화', '재미있는 루머' 등으로 용인하는 문화 안에서 자신이 만든 상황이 범죄가 되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채 내뱉는다면 바로 성폭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함께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황에 따라 어떤 의미로 전달될지를 생각하는 감수성을 길러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1. 자신이 사용하는 말에 자각하기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은 물론이고 직업이나 성별, 성장체성 등에 따른 부류에 대해서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대상, 도구'로 지칭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그런 '엄청난 폭탄'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자각합니다.

2. 의사소통하기(대화하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은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 불신 등을 줄일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 예방에 있어서도 서로의 생각에 대해 - 특히 성에 대해서도 -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이상으로 귀 기울이는 자세

는 필수입니다.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합니다.

3. 용기내서 말하기

자신이 성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주변 친구, 목격자의 한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의견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위기나 관계를 염려해 성폭력을 덮어두는 것은 관용이나 배려가 아닙니다.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위해 잘못 이해된 부분을 뚜렷하게 지적합니다.

4. 상대방에 의지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5.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기

성폭력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치부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희롱·성폭력은 오랫동안 외면과 내면의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에서 가능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고 :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 '남성을 위한 지침' 중 발췌, 편집]

성희롱·성폭력 대처방법

우리는 모두 중요한 행위자입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면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주변 친구라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신이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머리로 아는 바와 다르게 당황하거나 적절한 대처방법을 떠올리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좋은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어야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가해자는 물론 주변인들까지 모두 적절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길만이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먼저 자신을 치유해야 합니다. 주변의 지지를 통해 심신을 추스릅니다.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로 인해 무조건 고통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다 쉬운 사건 해결과 빠른 극복을 위해서는 주체적이고 당당한 태도를 갖고 가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1) 심리적·신체적인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이나 가족, 성폭력 상담실 등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안정을 취하도록 합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신체적 상해를 입히기 때문에 치유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성폭력을 당할만한 이유는 없으므로 '왜 거기에 갔었나?' '왜 끝까지 거부하지 못했나?' 식의 자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가해자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이므로 자책감,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기보다는 상처와 불안감, 공포감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삼입강간의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서를 요청하고 가해자 신체의 일부분이나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잘 보관해둡시다. 이 자료들은 당장에는 그럴 생각이 없더라도 마음이 바뀌어 나중에 고소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도록 하고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신이 겪은 일을 성폭력으로 받아들이기

심신이 다소 안정되면 겪은 일을 스스로 정리하고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에게 악영향을 준만큼 회피하고 물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크겠지만, 진정한 해결을 위해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 주체적인 입장이 됩니다. 일방적인 폭력은 자아를 많이 손상시킬 수 있는데,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한 상황을 본인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과정은 자아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성폭력으로 인지하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게 된다면 다른 시각에서도 바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에 다소 거리를 두어 바라볼 수 있다면 앞으로의 대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특히 가해자에게 이 사건과 피해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회적 역할을 인지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성폭력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중요하지만 많은 당사자들이 이 단계에서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규정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 피해자'라는 고정된 틀 속에 가두어두는 잘못된 통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사회적 구조 자체의 문제이지 '성폭력 피해자'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정체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삶의 어느 순간에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뿐 그 일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고,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에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를 이야기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성폭력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3) 사건 대처 방향 결정하기

힘들더라도 겪은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는 방법은 성폭력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로부터 어떻게 사과를 받을 것인지 어떤 처벌을 했으면 좋겠는지 상담가와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먼저 학교 성폭력상담실을 통해서 사건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를 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가해자에게 비공개/공개 사과와 함께 학제적인 처벌, 성폭력 예방교육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가해자의 태도와 자신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사건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를 결정할 때에는 경제적·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다는 단점과 가해자의 예방과 자신의 피해보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통해 어떤 의미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따져서 결정해야 합니다. 전국 상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 '피해자를 위한 자립', 한국여성인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ic.womenlink.or.kr) '성폭력 대처방법']





가해를 행했을 때



작정하고 행동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면 당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뭘 잘못했기에?”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남성중심적인 문화에서 스스로도 인식하지 않으며 성폭력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억울해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도에 반하는 행동이나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는지, 별 생각 없이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고통을 받은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돌아보세요.

신고하기까지는 피해자는 아무도 모르는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목이 되었을 때 의심하기에 앞서 자신의 행동과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도 행동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무지를 깨닫고 저지른 행동을 반성하며 책임을 다하세요.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해자로서의 인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인하고 덮으려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한다면 본인의 부족한 내세우는 끝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찰하고 책임지도록 하십시오.

[참고 : 한국어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c.womenlink.or.kr) '성폭력 대처방법']

주변 동료·사건 지원자일 때

방관하지 맙시다. 성폭력은 거시적인 문화풍토와 연결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나아가 성폭력 없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참여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치유를 도와주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도록 돕습니다. 각자 속한 커뮤니티 안에서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누구나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어느 경우라도 방관자로 머물 수만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1) 피해를 입은 사람의 친구라면

아직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자신의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몸을 씻지 않은 채로 병원에 가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고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합니다.



2) 가해를 한 사람의 친구라면

이전의 친밀감이 훼손될까봐 가해의 행동을 두둔하지 마십시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마십시오.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바탕으로 친구를 바라보아야 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참고 : 한국어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c.womenlink.or.kr) '성폭력 대처방법']



성폭력생존자 권리헌장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98년 여성성폭력추방주간에 맞춰 성폭력피해자권리헌장을 선포하였습니다. 권리헌장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실었습니다.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은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성장채성, 신체적 정신적 능력, 종교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존중, 지지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배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피해자도 피해입기를 원했거나 피해를 당할만했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폭력으로부터 살아나온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을 채택함은 더 이상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받거나 사회적으로 두려워할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피해자는 바로 그 피해로부터 살아나온 이유로 지지받고 격려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상적 권리

-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 불안, 불만, 억울,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권리

-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 고소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 수사, 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배석할 권리
- 사생활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권리
-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장을 신청할 권리
-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진료과정에서의 권리

- 병원에서 검사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 성폭력피해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진을 연계받을 권리
- 모든 검사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들을 수 있는 권리
- 진료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 친구, 가족, 상담원 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 성폭력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
-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받을 권리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



성폭력상담실 안내

- 40 • 주요 업무
- 42 • 이용방법 및 사건 지원 절차
- 43 • 변화를 위한 작은 실천
: 우리가 함께 변화하기



- 44 부록 1.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 50 부록 2. 관련 기관 정보



*** 연세대학교 성폭력상담실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2001년 1월 문을 열었습니다. 성폭력상담실은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평등한 대학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주요 업무

☞ 상담 지원

사이버성폭력,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등 학내 구성원들의 성문제 및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성적 고민에 대한 상담지원을 합니다. 상담은 직접 방문, 전화 또는 e-mail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학내 구성원의 성폭력 사건피해를 접수하여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건을 조사·처리합니다.

성폭력, 성차별 문제로 피해를 겪는 분들의 피해 상담 및 심리, 의료, 법률적 지원을 돕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학내 성폭력 근절과 상호존중적인 성문화 정착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 전문가 특강, 온라인 교육, 책자 발간 등을 실시합니다.



☞ 성인지력 향상 교육

학내 구성원들이 성인지적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평등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강연회, 학생 참여 워크숍, 가해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교육책자 발간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인지 교육 및 성폭력 예방 업무를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안내자료, 지침서 등을 발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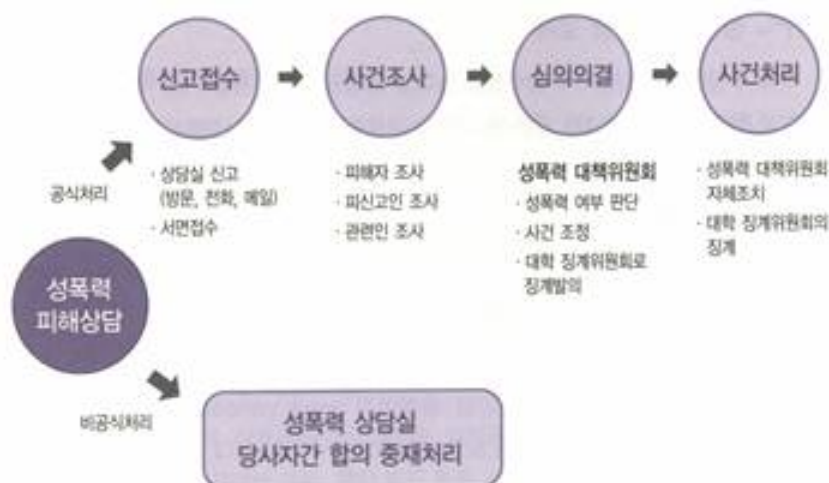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폭력상담실 홈페이지 (www.yonsei.ac.kr/~helper)와 연세여성네트워크(ywnet.yonsei.ac.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및 사건 지원 절차

- 상담내용 : 성차별, 성희롱, 스토킹, 데이트성폭력, 사이버성폭력 등 성폭력 피해 사건 및 일상적인 성고충 상담 지원
- 전화상담 : 02-2123-2118
- e-mail 상담 : helper@yonsei.ac.kr
- 방문상담 : 학생회관 2층 205호
- 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7:00

"개인의 인적사항과 상담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 전화를 위한 작은 팁 : 우리가 함께 변화하기

1. 자신의 성경험과 상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자랑하는 친구가 있을 때 그것이 폭력적인 행동임을 말해주기.
2. 성폭력적인 상황을 재미난 이야기인 양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것이 현실에서는 범죄에 해당함을 말해주기.
3. 친구들이 불법동영상을 돌려보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과 상황에 대해 얘기할 때, 현실의 여성들과 상황은 결코 그러하지 않음을 말해주기. 더불어 그게 사실인줄 알고 그대로 했다가는 오히려 미움 받게 됨을 알려주기.
4. 여성들이 출산휴가나 생리휴가 등을 사용할 때, '여자라서 좋겠다'고 하거나 '여자와 일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특별한 배려인 것처럼 말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하기.
5. 여성들의 외모나 옷차림 등에 대해 평하지 않기. 외모나 복장 등에 있어 서로 자유롭고 편안한 학교·직장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기.
6. 여성들을 잠재적인 연애대상이나, 성적인 대상으로서만 바라보지 않고 동료로 바라보기.
7. 함께 자리할 때 남자와 여자가 섞여 앉도록 권하지 않기.
8. 서로의 연애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두거나 간섭하지 않기.
9. 인터넷 상에 타인에 대한 성적 비방이나 욕설,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올려놓은 글을 보았을 때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며 지나치지 말고 해당 관리자에게 신고하기.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 성인식테스트 '우리가 변화하기' 중 발췌, 편집]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2000. 10. 10.
개정 2004. 11.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제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 학교의 통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성폭력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폭력상담실

제6조(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구성) ①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상담실에는 전문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6.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교육 및 재발방지
7.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보존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교학부총장(위원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부원장이 상 4인으로 하고 추천직위원은 교수위원 3인, 직원위원 3인, 학생위원 3인으로 한다. 교수위원(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폭력사건처리 회의시 추천직위원(교수, 직원, 학생)은 관련 사안에 참여한다. ②당연직 위원에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특정한 인간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남녀위원을 동등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피해자 보호
4.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회의) ①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신고 등) ①상당실은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피해자와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상담실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상당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의결) ①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파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④상당실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및 조치) ①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4. 가해자의 사회봉사

③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3)(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01. 3. 15.

개정 2004. 11. 25.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 18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재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 중인 교원, 직원, 학생 등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②규정 제3조에서 "학교의 통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라 함은 연구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및 교내 입주기관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서 그 인정 여부는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성폭력상담실장)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상담실장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전문상담원의 자격) 전문상담원은 규정 제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

제5조(전문상담원의 수) 상담실에는 1인의 전문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전문상담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성폭력 예방교육) ①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학기 1시간이상 실시한다.

②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폭력 사건 발생시 학칙에 의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제7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①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 부원장,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 3인,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

②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①성폭력사건처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성폭력사건 이외의 사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 이란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방 이 직원 또는 학생인 사안을 말한다.

제9조(특별위원회) ①위원회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①상당실은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시 그 피해자와 동성의 전문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전문상담원은 상담시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상 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④전문상담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 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 에 의뢰할 수 있다.

⑤상당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 며, 피해자, 피신고인,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⑥상당실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⑦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속하게 처리하 되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①위원회는 피 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심의시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 라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이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 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③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피 신고인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결과를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 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 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재적 된다.

⑦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 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 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6항, 제7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 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및 조치) ①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전동의를 조 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개사과는 연세춘추, 상담실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 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실명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 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가해자 재교육은 상당실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가해자의 피 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⑦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지정기관에서 이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⑨성폭력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 또는 사 건처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자에게도 징계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⑩위원회는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없이 징계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 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의 동의없이도 피해자보호원칙을 위반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공개할 수 있다.

⑪위원회는 규정 제5조 피해자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폭력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1주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재심의) ①사건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 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

제15조(기록 및 자료보존) ①상당실은 성폭력사 건 관련자외의 면담 및 조사내용을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②상당실은 성폭력사건의 진위여부조사, 처리 과정 등의 전과정의 기록을 보존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로 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 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7.1)로부터 신고 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3)(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성폭력 관련 기관/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6-24
02-338-2890

한국여성상담센터

<http://www.iffeminist.or.kr>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13번지 101호
02-953-1504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
서울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02-739-1366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
서울 관악구 봉천6동 1679-25 202호
02-883-9285

서울여성의전화

<http://www.womanrights.org>
서울 중구 신당1동 236-509 을지빌딩5층
02-2272-2161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http://www.was.or.kr>
서울 강동구 명일2동 47-1 세종프라자 705호
02-3013-1367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분쟁조정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반성폭력 네트워크

<http://www.kirikiri.org/network>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발행인 연세대학교 총장
발행처 연세대학교 성폭력상담실
인쇄일 2007. 2.
편집책임 성폭력상담실장
제작·편집 김정민, 박경숙
제작참여 심효원, 장수지(슬래), 김한신(여왕),
표박미라(고래), 늘, 19대 총여학생회
그림 홍찬주
디자인 연이프린텍